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55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김종민·백혜련·김남국

김용민 • 박범계 • 박주민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9. 12. 30.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, 2020. 1. 14. 공포되었음.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,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상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(안 제23조제2항, 제34조제3항·제5항, 제54조제3항, 제77조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2항 중 "지방검찰청 또는 지청"을 "지방검찰청 또는 지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 한다.

제34조제3항 중 "한다"를 "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"을 "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 한다.

제54조제3항 중 "검찰청"을 "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 한다.

제77조 중 "한다"를 "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3조(고지) ① (생 략) | 제23조(고지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| ② |
|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 | |
| 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| |
|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| |
|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소 | |
| 속 <u>지방검찰청 또는 지청</u> 의 게 | <u>지방검찰청 또는 지청,</u> |
| 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 |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|
| 하여야 한다. |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3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 | 제3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 |
| ①・② (생 략) |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 | 3 |
| 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 | |
| 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| |
| 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 | |
| 야 <u>한다</u> . | - <u>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</u> |
| |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|
| |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 |
| | <u>여야 한다</u> . |
| ④ (생 략) | ④ (현행과 같음) |
|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 | 5 |
| 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| |
| | |

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(피고인은 제외한다)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 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<u>지방검</u> <u>찰청 또는 그 지청</u>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 다.

- 제54조(추정보전명령의 집행) ① 지 · ② (생 략)
 - ③ 추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사집행법」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걸찰성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.

제77조(관할 법원) 이 장에 따른 지

| 지방검 |
|--------------------|
| 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 |
| 직자범죄수사처 |
| |
| 제54조(추징보전명령의 집행) ① |
| •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검 |
| 호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|
| 천 |
| 제77조(관할 법원) |
| |

심사, 몰수보전,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 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 사에게 하여야 한다.

| 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|
|-----------------|
|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 |
| 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. |